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 근거 마련 〉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74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 근거 마련	3
2.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14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74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2. 11.

(3) 회 부 일 : 2026. 2. 12.

나. 제안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종사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대다수 종사자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휴가를 쓰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종사자의 휴가 등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시급히 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파견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며, 현재는 대체인력 파견지원 대상이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인은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음.

덧붙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제35조의5 신설 및 제58조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휴가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대체인력 파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근거를 규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대체인력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제3장 사회복지시설</u>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u>사회복지시설</u>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u>사회복지시설</u>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2. (생략) ③ (생략) <신설>	<u>제3장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등</u> 제35조의2(종사자) ① ----- -----<u>시설</u>----- ----- -----. ② ----- ----- -----<u>시설</u>-----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35조의3(대체인력 파견지원 사</u>

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종사자의 휴가·휴직·교육
·훈련·질병·산업재해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
지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대체
인력을 파견하여 주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 파
견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각각 사회복지대체인
력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회복지
지대체인력지원센터(이하 “중앙
대체인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의
기획 및 평가
2. 제4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총괄관리 및 지원
3.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
영 및 대체인력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그 밖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운영 및 대체인력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시·도에 두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이하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체인력의 모집·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대체인력의 교육·훈련

3. 대체인력 파견지원 신청 접수 및 파견지원

4. 그 밖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 및 대체인력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대체인력 파견지원에 드는 비용은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파견지원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
및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법
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그 위탁업무 수
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범위와 파견지원의
기준·방법·절차, 중앙대체인
력지원센터와 시·도대체인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6
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

사항)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
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
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
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
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

제35조의4(종사자 채용 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시설

-----.

② -----시설-----

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적용한 자

<신 설>

② ~ ④ (생략)

-----.

③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자는 제35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대체인력 파견지원을 받은 경우 파견지원을 신청할 때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과태료) ① -----

-----.

1. 제35조의4제1항-----

2. 제35조의4제2항 또는 제3항-----

3. 제35조의5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생활 균형 및 휴식권 보장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¹⁾를 근거로 하여 2018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631-327)’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연도 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25	5,125	5,702	5,937	6,245	6,535	6,650	6,800	7,120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공백 등을 우려하여 휴가 등을 활용하기 어렵다²⁾는 점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업무공백 최소화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 보장 등을 위해 추진되었고,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량(36.6%), 눈치보임(34.7%) 등으로 인하여 법정휴가 사용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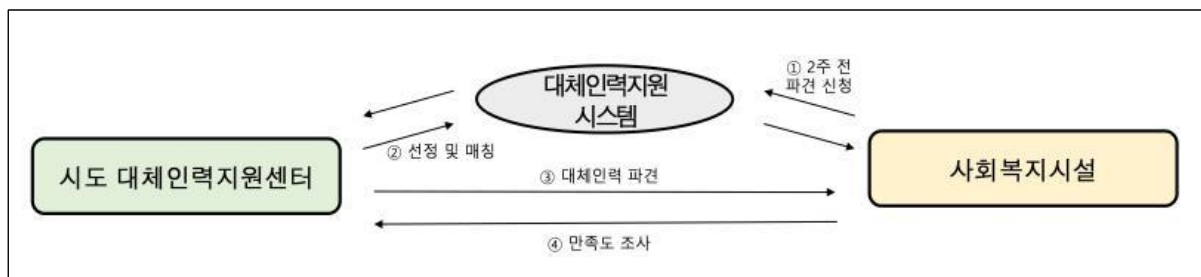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3)에 따른 사회복지시설⁴⁾을 대상으로 돌봄 및 조리 인력의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1회 연속 7일 이내, 1일 8시간을 지원하며 2026년 기준 274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개요 >

구분	내 용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대상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지원 사유	휴가, 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시설종사자 결원
지원 기간	1회 연속 7일 이내, 지역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 지침으로 최대 60일 이내 연속지원 가능
지원 단가	돌봄직·시도 관리직: 월 273만원, 조리직: 월 256만원, 중앙관리직: 월 253만원 (’25년 기준,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 대체인력 지원 절차 >



자료: 보건복지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제외

□ 그런데 사업의 법적 근거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⁵⁾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일반적 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조문⁶⁾에 따르더라도,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을뿐,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돌봄 등 사회복지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직무소진 등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2018년 이후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 2026.7.1. 개정 2025.12.30.)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8년째 진행중인 사업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증가하는 대체인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신청 대비 지원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대체인력 신청 대비 지원 건수 및 지원율 추이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신청일수	65,958	81,909	95,781	111,496	110,021
지원일수	45,685	46,656	51,223	52,075	50,285
지원율	69.3%	57.0%	53.5%	46.7%	45.7%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⁷⁾으로 하는바,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근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747)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7)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휴직 등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인력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가나 교육·훈련 등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공백을 메워줌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회복지사 등의 휴직·질병·산업재해 등 비교적 장기간 근로가 중단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인력 및 예산 등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일시적 업무 공백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 시행 당시에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업무 위탁과정이 추가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위탁여부에 대한 혼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 및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는 각각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지역별 사회서비스원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체인력지원센터 위탁 운영 현황 >

시도	위탁기관	정원	현원
계		274	249
중앙	중앙사회서비스원	1	1
서울	서울사회복지협의회	31	20
부산	부산사회복지사협회	15	17
대구	대구사회서비스원	15	15
인천	인천사회서비스원	11	11
광주	광주사회서비스원	13	13
대전	대전사회서비스원	15	15
울산	울산사회서비스원	9	8
세종	세종사회서비스원	3	3
경기	경기사회서비스원	44	22
강원	강원사회서비스원	12	10
충북	충북사회서비스원	13	13
충남	충남사회서비스원	17	13
전북	전북사회서비스원	15	14
전남	전남사회서비스원	12	12
경북	경북사회복지협의회	28	27
경남	경남사회서비스원	13	28
제주	제주사회복지사협회	7	7

자료: 보건복지부

2.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종사자로 채용하려는 사람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안 제35조의5 신설),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5조의5(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로 채용하려는 사람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종사자로 채용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

	<u>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u> <u>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제3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자”는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의 장”으로, “종사자”는 “대체인력”으로 각각 본다.</u>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8조(과태료) ① ----- ----- ----- -----.
1. <u>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u>	1. <u>제35조의4제1항</u> ----- -----
2. <u>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u>	2. <u>제35조의4제2항 또는 제3항-</u>

근로조건을 변경·적용한 자	----- -----
<신 설>	3. 제35조의5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두고 있음.⁸⁾

8)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제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 1의6. (생략)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9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 결격사유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9)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범죄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수사, 재판, 공무원의 임용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종사자가 직접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하거나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설치·운영자 또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임.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개정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요청받은 관할 경찰관서는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경찰청은 법무부(검찰청)로부터 죄명·처분일자·선고결과 등의 자료를 통보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피해자 등 범죄사실(범죄의 내용)에 관한 자료는 통보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 회보만으로는 현행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10)에서의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결격사유의 준부는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회보받은 범죄경력자료를 바탕으로 형집행종료(면제) 일·적용법조·범죄사실 등의 정보를 관할 검찰청, 법원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외에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¹¹⁾에 대한 범죄경력회보 시에도 관할 검찰청 및 법원 등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한편,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채용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의무를 채용 시 뿐만 아니라 채용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87)¹²⁾에서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5년마다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1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7)

제35조의4(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종사자가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채용한 날부터(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의 경우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을 말한다) 5년마다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휴식권 보장 등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바, 대체인력 관련 조항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일원화가 필요함.

또한, 실제 현장에서 범죄경력조회가 법인·시설 운영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경력조회의 주체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 「과건법」상 '근로자과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나,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근로자를 모집·채용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사업은 근로자과건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근로자과건'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건법」 적용을 받으므로, 관련 문언 추가가 필요함.

- (전남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의 범죄경력조회는 대체인력의 채용 시뿐만 아니라, 채용된 대체인력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시 필요한 요건이므로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은 현장 서비스 인력의 일시적 결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의 일반 행정사무 등의 인력은 정책 대상과 성격이 달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복지법인으로 과도하게 사업대상 확대

시 대체인력사업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로 실제 돌봄 인력의 공백
시 지원이 축소될 수 있음.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대체인력 파견 사업을 ‘할 수 있다’ 등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인력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대체인력
지원 대상을 법인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사 서비스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97

라)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조회 주체	목 적	제출 서류	
본인	본인 스스로 확인	1. 조회 의뢰서(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호 서식)	2. 조회의뢰자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등) 사본 1부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설치·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	1. 조회 의뢰서(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서식)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 법령과 운영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자체장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		

* 위 요청서 서식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신청서식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조회 결과를 누설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회 결과를 취득·사용하였을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형실효법」 제10조제2항·제3항)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 법무부 형사기획과-5895('20.7.29)
 - 경찰청은 죄명과 「형실효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선고 또는 처분을 기준으로 범죄경력을 회보함. 경찰청에서 범죄경력을 회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 기간 경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행종료·면제 등의 정보, 죄명으로 구분되지 않는 범죄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확인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무부 형사기획과-6278('10. 10. 28.)
 - 법령에 임명·고용 등의 자격제한 규정이 있는 한 해당 임명·고용 등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형실효법 6조 1항 9호에 따른 회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제35조의2(종사자)에 따른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조회 가능(동 지침 5~6쪽 참고)